

#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846,654,767	55,399,643
일반회계	1,530,749,574	45,922,487
특별회계	315,905,193	9,477,156
공기업특별회계	226,705,885	6,801,17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3,745,737	1,912,37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6,868,311	2,306,04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6,091,837	2,582,755
기타특별회계	89,199,308	2,675,979
주택사업특별회계	3,634,888	109,047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4,997,152	149,91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436,909	13,107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9,503,238	285,097
교통사업특별회계	22,404,215	672,126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1,617,069	648,512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6,605,837	798,17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276,17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5,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회 추경예산 제출 후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